

의안번호	2216421
의 퇴 인	안철수 의원
회 답 일	2026.6.1.
추 계 번호	26B0540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해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억원, 2031년 25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9억원(연평균 18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(안 제69조의2)	12	14	17	21	25	89	18

- 주: 1. 본 추계서는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, 개별 수급자의 수급요건 및 경기변동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며,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자영업자 조기재취업 수당 및 연장급여에 관한 지급 요건, 지급 수준, 지급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될 경우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
2.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임을 고려할 때,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및 가입요건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4.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의 수급 행태와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의 수급 행태의 차이에 따라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가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의2(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)	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름 <단서 삭제> <u>다만,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함</u>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9조의2(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-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¹⁾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현행법은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, 직업능력개발 수당,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자영업자에 대해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임으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명목임금상승률	3.3	3.3	3.3	3.3	3.3	3.3

(2026.3. 기준, 단위: %)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자영업자 조기재취업 수당²⁾ 및 연장급여³⁾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액으로 사업대상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
 -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의 수급 행태와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의 수급 행태가 상이할 수 있으나, 이로 인한 변화는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
가. 조기재취업 수당

- 자영업자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
 - (사업대상자) 추계기간(2027~2031년)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수는 최근 5년간(2021~2025년)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
 - － 현행법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당연적용이 아니라 임의가입 형태로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, 보험 혜택을 받는 구조이므로, 추계기간(2027~2031년) 동안 행태변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가 변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
2) 제64조(조기재취업 수당)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)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.

3) 제51조(훈련연장급여)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·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.

제52조(개별연장급여)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53조(특별연장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표 2] 자영업자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	36,859	42,643	47,604	53,705	61,998
구직급여 수급 자영업자 수	2,056	2,575	3,248	3,490	3,820

자료: 고용노동부

[표 3]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자영업자	5,207	6,079	7,097	8,286	9,674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추계기간(2027~2031년) 동안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 수는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에 2025년 기준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 대비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 수의 비중(5.8%)을 적용하여 산출
-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행태가 상이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근로자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현황

(단위: 명, %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(A)	1,774,372	1,628,157	1,661,161	1,682,372	1,707,453
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 수(B)	92,524	97,600	97,410	111,133	99,161
(B/A)	5.2	6.0	5.9	6.6	5.8

주 1) 임금근로자 기준(일용근로자 포함, 연장 포함)

2) 2년에 걸쳐 수급받는 경우, 수급자는 연도별로 각각 포함하고, 지급액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각 연도에 지급된 금액을 각각 반영

자료: 고용노동부

[표 5] 자영업자 조기재취업 수당 사업대상자 수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자영업자	302	353	412	481	562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1인당 지원단가) 1인당 지원단가는 추계기간(2027~2031년) 동안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원단가에 2025년 기준 근로자의 1인당 구직급여 집행액 대비 조기재취업 수당 집행액의 비중(67.8%)을 적용하여 산출
 -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/2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단가 및 지급기간으로 분리하기 곤란하므로, 급여일액이 아닌

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

※ (자영업자 구직급여 지원단가) 추계기간(2027~2031년) 동안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원단가는 2025년 기준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

[표 6] 1인당 평균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원단가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지원단가	4.83	4.81	5.16	5.39	5.37

자료: 고용노동부

[표 7] 1인당 평균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원단가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지원단가	5.73	5.92	6.11	6.31	6.52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※ (조기재취업 수당 지원단가) 추계기간(2027~2031년) 동안 조기재취업 수당 지원단가는 장래에 발생할 '1인당 평균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원단가'에 '2025년 기준 근로자의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 대비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액의 비중(67.8%)'을 적용하여 산출

-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행태가 상이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 지급액 대비 조기재취업 수당 집행액의 비중이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지급액 대비 조기재취업 수당 집행액의 비중과 상이할 수 있겠으나,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
[표 8] 근로자 조기재취업 수당 집행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집행액(A)	6.96	6.80	6.70	6.81	6.98
1인당 평균 조기재취업 수당 집행액(B)	4.79	4.80	4.81	4.90	4.91
(B/A)	70.4%	71.6%	70.6%	70.2%	67.8%

자료: 고용노동부

[표 9] 자영업자 1인당 지원단가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구직급여 지원단가(A)	5.73	5.92	6.11	6.31	6.52
조기재취업 수당 지원단가 ($B=A \times 67.8\%$)	3.89	4.01	4.14	4.28	4.42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10] 자영업자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수급대상자(A)	302	353	412	481	562
지원단가(B)	3.89	4.01	4.14	4.28	4.42
추가재정소요($C=A \times B$)	1,175	1,417	1,708	2,059	2,483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연장급여

- 자영업자 연장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
 - (사업대상자) 자영업자 연장급여 수급자 수는 [표 3]에 수록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에 2025년 기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 수 대비 연장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(0.014%)을 적용하여 산출

[표 11] 근로자 연장급여 지급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	2021	2022	2023	2024	2025
사업 대상자	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(A)	1,774,122	1,627,997	1,661,087	1,682,318	1,707,453
	연장급여 수급자 수(B)	1,535	738	422	321	235
	B/A	0.087%	0.045%	0.025%	0.019%	0.014%
집행액(C, 백만원)		4,590	2,119	1,250	953	735

자료: 고용노동부

- 자영업자 연장급여 수급자 수는 올림하여 산출하되, 2025년 기준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와 추계기간(2027~2031년) 동안 수급자의 행태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
[표 12] 자영업자 연장급여 사업대상자 수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자영업자	1	1	1	2	2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1인당 지원단가) 추계기간(2027~2031년) 동안 자영업자 연장급여 지원단가는 근로자의 2025년 기준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 대비 연장급여 지급액의 비율(43.2%)에 [표 7]에 수록된 추계기간 동안 자영업자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
 - 연장급여는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 등으로 구성되며, 각각 지급일수가 상이하여(개별연장급여 52일, 훈련연장급여 125.3일⁴⁾) 지원단가와 지급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
 - 근로자의 구직급여 지급액 대비 연장급여 지급액의 비중이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지급액 대비 연장급여 지급액의 비중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

[표 13] 근로자 연장급여 집행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집행액(A)	6.80	6.70	6.81	6.98	7.24
1인당 평균 연장급여 집행액(B)	2.99	2.87	2.96	2.97	3.13
B/A	44.0%	42.9%	43.5%	42.5%	43.2%

자료: 고용노동부

[표 14] 자영업자 1인당 지원단가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구직급여 지원단가(A)	5.73	5.92	6.11	6.31	6.52
연장급여 지원단가(B=A×43.2%)	2.48	2.56	2.64	2.73	2.81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4) 자료: 고용노동부

[표 15] 자영업자 연장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수급대상자(A)	1	1	1	2	2
지원단가(B)	2.48	2.56	2.64	2.73	2.81
추가재정소요(C=A×B)	2.48	2.56	2.64	5.45	5.63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16] 자영업자 조기재취업 수당 및 연장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추정치):

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조기재취업 수당(A)	1,175	1,417	1,708	2,059	2,483
연장급여(B)	2	3	3	5	6
추가재정소요(C=A+B)	1,178	1,420	1,711	2,065	2,488

주: 1. 본 추계서는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, 개별 수급자의 수급요건 및 경기변동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며,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자영업자 조기재취업 수당 및 연장급여에 관한 지급 요건, 지급 수준, 지급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될 경우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

2.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임을 고려할 때,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및 가입요건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4.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의 수급 행태와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의 수급 행태의 차이에 따라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가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□ 본 추계서는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, 개별 수급자의 요건 및 경기변동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
○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자영업자 조기재취업 수당 및 연장급여에 관한 지급 요건, 지급 수준, 지급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될 경우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

－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며,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및

가입요건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증감할 수 있음

-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의 수급 행태와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의 수급 행태의 차이에 따라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가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